

#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 New Terrorism and National Crisis Management

김범중\*, 조호대\*\*

극동대학교 법경찰학부\*,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Boum-Joong Kim(kbj@kdu.ac.kr)\*, Ho-Dae Cho(jhd30@sch.ac.kr)\*\*

### 요약

21세기 국가위기환경은 변화의 템포가 빠르고 유동적이면서 국가안보위협의 유형과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결과 위협의 진단과 대처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력에 의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그들이 가진 재산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테러리즘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기술발전과 맞물리면서 이 세상 거의 모든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잠재적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테러리즘의 개념과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테러리즘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테러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들 역시 테러리즘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비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뉴테러리즘 | 국가위기관리 | 테러사건 | 테러활동 | 테러리스트 |

### Abstract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national crisis, national security threats taempoga yimyeonseo type of fast, flexible and diverse, principal, resulting in a diagnosis of a threat far greater than in the past and deal with uncertainty in the features have done.

That this study, the traditional concept of terrorism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new terrorism, terrorism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any country to be a target of terrorism, and terrorism, people also can become the target of a real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 situations In contrast with the policy dimensions of terrorism is to the recommendations.

■ keyword : | New Terrorism | National Crisis Management | Terrorist Attacks | Terrorist Activities | Terrorist |

### I. 서 론

21세기 국가위기환경은 변화의 템포가 빠르고 유동적이면서 국가안보위협의 유형과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결과 위협의 진단과 대처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 위기는 '국가의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대통령훈령 제124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다 확대 개념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및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정의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위기관리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발생시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이전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제반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의 국가위기관리의 정의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일체의 국가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및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을 집행하는 일상적인 과정'으로 정의되어 진다[1].

이러한 국가위기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유형 중 폭력에 의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그들이 가진 재산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테러리즘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기술발전과 맞물리면서 이 세상 거의 모든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잠재적 공격대상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20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폭력사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은 과거에는 대부분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지역적이고 한정된 국가적인 것 이었지만,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은 국가간의 재래식 전쟁, 핵전쟁, 대규모 군대간의 충돌이 아닌 비대칭 위협이고 이는 21세기가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고, 일단 발생하면 견제할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심리적 공황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테러리즘의 경보발령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긴장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리즘이라고 하면 북한에서의 도발정도로만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테러리즘이 발생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테러리즘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충점을 두고 있어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고 대처하는 체계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고 국민들 또한 테러리즘에 대하여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테러리즘의 개념과 뉴 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테러리즘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테러리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들 역시 테러리즘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대비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I. 테러리즘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테러리즘의 개념

우리나라 대테러활동의 기본지침이 되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제2조 제1항에 제시되어 있는 테러범죄에 관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테러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쳐벌에 관한 협약 제2조),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 운항 중인 항공기의 폭파 또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주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폭파 등(국제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를 위한 의정서 제2조),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항공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항해시설의 폭파 등(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 선박억류 또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폭파 등(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폭파 등(대륙붕 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강탈 등(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반테러법인 Patriot Act(2001) 제802조(18 U.S.C. 2331)에 의하면 테러는 일반시민을 협박 또는 강요하거나 정부정책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자행하는 연방 또는 주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찰청 조직령」 제17조의 2에 의하면 테러는 널리 공포 또는 불안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극좌 및 기타의 주장에 근거한 폭력주의적 폭력활동이라고 이해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개개 행위가 형법상 일정한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해당 법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테러리즘은 첫째, 정치적 목적, 둘째,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 셋째, 심리적 충격이나 공포심, 네째, 소기의 목표나 요구사항의 관철 등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폭력행위와 구별되는 테러행위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요소가 많이 회색되어 일반시민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3].

## 2. 뉴테러리즘의 특징

위 테러리즘의 개념에서 살펴본 전통적 테러리즘과는 달리 뉴테러리즘은 개념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의 전통적 테러리즘과는 전혀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 2.1 불명확성

과거의 테러리즘은 식민지 세력의 잔재를 청산한다든가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한다든가 하는 뚜렷한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테러를 자행한 뒤 자신들의 얼굴과 소속을 알리는 성명을 통해 요구조건을 떳떳하게 밝혔다. 하지만 뉴테러리즘에서는 극단주의자들이 서방 특히 미국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 문화와 지역 패권에 대한 반대 등의 추상적이 이유를 내세워 테러를 자행하면서 테러집단 자신들과 비호 세력을 보호하고 공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요구조건의 제시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이른 바 얼굴 없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불명확성이 증가하고 있다.

### 2.2 피해 극대화

과거의 테러리즘은 항공기나 인질납치, 중요시설 점거, 요인암살과 같이 상징성을 띤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테러집단의 대의명분을 널리 알리고 일반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인명 피해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다기보다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의사전달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나, 뉴테러리즘은 전쟁의 한 형태와 같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수단 또

한 전쟁과 같이 무차별적인 인명 살상과 경제적 피해의 극대화로 인하여 테러 대상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려는 목적이 강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 2.3 지능화

과거 테러집단의 행동대원들은 대부분 사회적 소외 계층 출신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으나 뉴테러리즘에서의 행동대원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중산층 출신으로 교육수준 역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각종 범죄기록이나 정치적 활동이 없는 유럽과 미주권의 이민2세들을 충원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기술적, 행동적 지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테러집단의 경우에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수직형 체계에서 단일화된 조직이 아닌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친 그물망 조직의 이념 결사체로 인터넷 비밀사이트, 이메일, 채팅룸 및 하이테크 이동통신 수단 등의 연락수단을 활용하는 다원화된 중심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중심을 제거해도 다른 중심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테러집단의 완전한 외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직적 지능화를 이루고 있다.

### 2.4 대테러리즘 수단 곤란성 증대

과거의 테러장비로는 총기나 폭발물 등이 사용되어 대중이용시설이나 국가중요보호시설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색출이 가능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테러 장비로 사용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인명살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세균을 사용하는 생화학적 테러리즘과 국가의 중요 전산망과 기간망을 일시에 파괴하는 사이버테러리즘의 경우 색출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에 대한 방어의 곤란성이 증대한다.

### 2.5 공포확산 용이

현대사회는 언론매체에 대한 상황 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이 빠른 개방화 시대로 테러리즘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테러집단이 원하는 만큼의 공포감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확산될 수 있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 III. 테러리즘 실태분석

#### 1. 연도별·유형별 테러리즘 발생현황

[표 1]에 따라 테러리즘 유형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의 1,877건 중 시설물 폭파가 1,051건, 무장공격이 539건, 암살이 172건, 인질납치가 99건, 기타 16건으로 나타났고, 2006년에는 총 2,885건 중 폭파 1,566건, 무장공격 1,031건, 암살 115건, 납치 103건, 항공기납치 1건, 기타 69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총 테러리즘 3,435건 중 폭파 1,654건, 무장공격 1,513건, 암살 82건, 인질납치 160건, 항공기납치 3건, 기타 23건으로 나타났다.

테러리즘 연도별,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면 시설물 폭파와 무장공격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도별·유형별 테러리즘 발생현황

구 분	96	97	98	99	00
계	426	435	458	506	429
폭 파	172	174	172	205	223
무장공격	151	167	207	188	113
암 살	56	41	38	49	45
인질납치	26	23	26	50	32
항공기납치	8	7	4	6	9
기 타	13	23	11	8	7
01	02	03	04	05	06
466	497	809	988	1,877	2,885
231	226	357	486	1,051	1,566
149	216	310	324	539	1,031
41	20	64	50	172	115
31	13	17	115	99	160
7	3	3	1	0	1
7	19	58	12	16	69
					23

\*자료 : 경찰청, 대테러센터 내부자료(2007)

#### 2. 테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표 2] 테러리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총 2,885건 발생에서 사

망자가 13,334명, 부상자가 24,592명으로 나타났고 2007년에는 총 3,435건에서 사망자가 14,053명, 부상자가 24,532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보다 2007년이 테러 발생건수가 약 19%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지역이 1,466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아태지역이 1,353건(39%)의 테러가 발생했고, 아프리카 지역이 379건(11%), 유럽지역 189건(6%), 미주지역에서 49건(1.4%)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테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년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6	2,885	13,344	24,592
2007	3,435	14,053	24,532

\*자료 :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 내부자료(2008)

#### 3. 한국인 관련 주요 테러현황

[표 3]에서 보듯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테러에서 안심할 수 있는 국가의 하나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9.11 이후 한국인 관련 주요 테러사건 현황

일시	발생장소	내용	비고
03.11	이라크	이라크 저항세력이 근로자 4명 피습, 사상	4명 사상
04.04	이라크	이라크 저항세력이 NGO 2명 억류, 석방	
04.04	이라크	이라크 저항세력이 목사 7명 납치, 석방	
04.05	이라크	이라크 저항세력이 한국군 철수를 위해 김선일 납치 살해	1명 사망
05.02	러시아	러시아 스키드족의 테러	3명 부상
05.05	미얀마	동시다발 폭탄테러로 11명 사망 62명 부상	2명 부상
05.10	인도네시아	연쇄폭탄테러로 26명사망 100여명 부상	6명 부상
06.03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무장단체가 KBS특파원 1명 납치, 석방	
06.04	스리랑카	자뢰매설에 의한 폭발	1명 부상
06.05	동티모르	해직군인과 정부간 교전에서 1명 부상	1명 부상
06.06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해방운동이 근로자 5명 납치, 석방	
07.07	아프가니스탄	교인 23명 납치, 2명 살해	2명 사망
07.08	레바논	파타일 이슬람이 복합빌전소 시설 파괴	

07.10	인도	PPSS에의해 근로자 3명 억류, 석방	
07.10	필리핀	쇼핑몰 폭탄테러로 8명 사망 70여명 부상	1명 사망
07.10	소말리아	해적에의해 골든노리호 피랍 선원 1명 억류, 석방	
08.01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한 호텔 폭탄테러로 4명사망 6명부상	피해 모면
08.03	이라크	호텔에 차량폭탄테러 발생	피해 모면
08.03	필리핀	무장지역주민에 의해 사업가 1명 피납, 석방	
08.04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선사인 스카이 피습 선원 13명 피해모면	피해 모면
08.04	소말리아	한진해운 선박 해적에의해 피습	
08.07	나이지리아	한지무장세력에의해 현대중공업 비지선 피습	
08.08	소말리아	한국인 선원 1명 납치기도 피해 도주중 부상	1명 부상
08.08	파키스탄	삼부토건 건설현장에 자동소총 공격	피해 모면
08.09	소말리아	한국 화물선 해적에게 피랍	

\*자료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재구성

## IV. 정책적 제언

### 1. 대테러관련법의 조속한 제정

우리나라에서 대테러리즘 활동의 기반은 대통령 훈령 제47호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훈령은 국가 대테러 활동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기관에 따라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비한 대테러업무 체제와 대테러활동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이므로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비밀로 분류되어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 없어 테러의 법적 규제에 대한 합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법률의 뒷받침없는 국가의 대테러활동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했거나 기존의 법을 대폭 강화한 사례를 보면 개인의 인권보호도 중요하나 다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대테러리즘 업무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에 걸쳐진 업무 영역이며, 테러 대응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반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음으로 현재의 대테러 활동만으로는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물론 형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테러리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계 법률을 개정다고 하더라도 10여개의 관계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며, 대테러관련 전담기관의 설치와 사이버 테러, 생·화학무기, 핵무기 등을 이용한 뉴테러리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테러리즘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테러예방과 방지,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테러관련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 토대를 만들고, 제정된 테러방지관련법을 근거로 국가적 차원의 일사분란한 대테러업무의 효율화 체계와 대응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 2. 대테러 총괄 기획조정 기구 상설

대테러리즘 활동의 영역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어느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관련기관 간의 조정 및 효율적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는 대테러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CIA는 공작 차장보 산하에 FBI·국방부·국무부·NSA 등 14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센터(CTC)를 구성하여 정보공동체 관계기관 대테러활동 조정과 정보수집·분석·공작활동을 수행하고, 영국 비밀정보부(SS)는 국내정보 기관으로 9.11이후 해외 정보부(SIS), 경찰특수부 등과 합동기구를 구성, 비밀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공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상정되었던 법률안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점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를 두어 대책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한다는 점과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 또는 대테러정보센터를 두도록 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인적자원 구성과 예산이 낭비되거나, 현재까지 운영해온 대테러시스템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시급한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업무의 총괄기구를 상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반드시 논의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방정보활동이 최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기능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한다.

둘째, 뉴테러리즘 등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정보력 및 대응책으로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세계 각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테러 위해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보의 교류는 각국의 정보·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장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인 대테러 활동은 여러 부처가 협력하면서 서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간 조율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 3. 테러 예방조치 강화

9.11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테러리즘은 대규모의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의 처벌 등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테러리즘이 실행된 후 테러리스트를 체포했다 하더라도 확신범적 성격을 지닌 이들로부터 형사정책적 효과를 크게 거둘 수는 없다.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테러리즘 계획을 미리 탐지해 테러리스트들과 테러집단 색출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4]. 이러한 양질의 정보 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역량있는 정보기관을 유지·발전시키면서 각 정부기관에서 수집된 테러리즘 정보를 통합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테러기관으로 하여금 테러우려자에 대해 감시·감청(유·무선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 우편 검열, 전산망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부여함으로써 테러방지를 위한 유용하고 결정적인 정보획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발물·독극물·화생방 물질 등 테러리즘에 이용되는 물질에 대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된 후의 잉여물이 처리될 때까지의 유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제제도 및 불법거래 감시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테러대상이 되

고 있는 국가기반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대테러 목적 비디오 설치 등 무단 침입 감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위험수단 관리 및 시설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5].

### 4.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현대 테러리즘은 무차별성, 잔인성, 점조직성, 수단의 다양성, 국제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6] 그 대응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내 기관들의 대테러 역량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관 총력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대테러활동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집한 모든 테러정보를 통합·분석하고 국내 여러 기관에 분산된 대테러 업무를 기획·조정할 수 있는 대테러 기구에서 조직적으로 시민들에게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알았을 때 대테러기관에 신고토록 유인책을 만들고, 테러이용 가능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및 판매업체가 정부기관과 상시 협조하는 체계를 구성하여 테러억제에 기여토록 하며, 대학에서 심층적인 테러대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대테러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5. 인권보호장치 마련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테러활동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국가기관이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불완전한 법을 제정하거나 테러리즘으로부터 방어가 허술할 수 밖에 없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되 우려되는 인권침해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9.11테러 이후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5년 「대테러보완법」을 제정하여 FBI의 개인정보 접근권과 관련하여 법무부 감사관으로 하여금 FBI의 권한남용 및 이러한 절차의 효율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대테러 보완법 제 106조 A), 대테러법 제206조의 포괄적 감청권과 관련해서도 법원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감청개시 10일내에 감청실시 장소 및 감청 실시 총건수 등을 법원에 통보토록 규정(대테러보완법 제 108조)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대테러 활동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대테러기관이 통신 감청·개인자료 열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업무를 행할시에는 상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둘으로써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7].

## V. 결 론

최근 들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사건들의 특징을 보면 정치적 목적, 인종적 갈등, 국가 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테러를 자행한 과거와는 달리 아무런 목적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는 정치지도자나 군인, 여객기, 정부건물들과 같이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경성목표물(hard targets)을 대상으로 한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 혹은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과 장소인 지하철이나 철도, 호텔, 음식점 등과 같은 연성목표물(soft targets)을 그 목표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8].

테러수법 또한 인터넷을 매개로 테러공격 방법과 사제 폭발물 제조기법을 전파하여 사용하기 쉽고, 적발이 곤란한 액체폭약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으며, 피해규모나 과급영향력에서 위험성이 더욱 높은 화학무기테러, 생물테러와 핵테러의 잠재성에 대한 경고가 지속되면서 과거의 수많은 대테러 이론과 대응책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테러활동은 주체에 대한 규제, 객체의 보호, 수단의 관리, 사건발생 대응 등과 같이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주체에 대한 규제로는 테러리스트의 국내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테러리스트 잠입저지 및 국내에서의 테러연계 불순활동 차단 둘째, 객체의 보호는 고전적 테러 대상이 되어왔던 국가중요시설·주한 외국인 시설 등과 새로운 테러목표로 부상 중인 소프트 타겟으로 지칭되는 다중 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보호, 셋째, 수단의 관리라 함은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폭발물·화학물질·독가스 등을 테러범이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넷째, 사건발생 대응은 구조·구난 테러범 진압, 수사 활동 등을 말한다.

국가위기는 안보위기,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국가위기관리 영역은 전통적 안보위기, 재난위기, 국가핵심기반위기로 구분되어진다. 테러리즘의 경우 국가위기관리영역에 있어서 전통적 안보위기와 국가핵심기반위기에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위기를 제외하고는 발생시 그 충격과 공포, 인적·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테러리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의 학술적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위기관리* 논집, 제2권, 제1호, p.56, 2006.
- [2] 이상현, “테러와 한국의 국가안보”, 세종 정책토론회 보고서, p.192, 2004.
- [3] 한상암, “인질테러 현상에 관한 연구”, *대테러연구*, 31집, pp.452-454, 2008.
- [4] 주수기, “1세기 국제테러리즘”, *대테러연구*, 31집, pp.132-134, 2007.
- [5] Ronczkowski and Michael, “Terrorism and

- Organized Hate Crime: Intelligence Gathering, Analysis and Investigations," Boca Raton, Florida, Florida: CRC Press;, p.71, 2004.*
- [6] 강영숙, 이상철, “테러리즘의 이해”, 서울:진영사, pp.276-285, 2008.
- [7] 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공안행정학회보, 18권, 3호, pp.192-196, 2009.
- [8] 이황우, “주요 선진국의 대테러 정책 조명”, 대테러연구논총 제3호, p.95. 2006.

### 저자 소개



김 범 중(Boum-Joong Kim)

정회원

- 1993년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9년도 : 북경정법대학교 국제 무역법 석사
- 2002년도 : 북경정법대학교 경제 법 박사

▪ 현재 : 극동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관심분야> : 재난관리법제, 경찰법, 헌법, 경찰작용법

조 호 대(Ho-Dae Cho)

정회원



- 1997년도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
- 1999년도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석사
- 2003년도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인사, 재난관리, 위기관리, 경찰운용, 경찰조직